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99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서지영 · 조정훈 · 김대식
정성국 · 곽규택 · 이인선
박수영 · 김승수 · 이현승
최수진 · 백종현 · 박충권
성일종 · 박성훈 · 서천호
박덕흠 · 조승환 · 김용태
강명구 · 이종배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 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0조의2(비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

제254조 중 “제250조”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

제255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

제256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u>第250條</u>의 例에 依한다. 제254조(미수범) <u>제250조</u>,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255條(豫備, 陰謀) <u>第250條</u>와 第25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第256條(資格停止의 併科) <u>第250條</u>, 第252條 또는 第253條의 境遇에 有期懲役에 處할 때에는 10年 以下の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	<u>제250조의2(비속살해)</u>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 ----- ----- -----<u>제250조, 제250조의2</u>----- -----. 제254조(미수범) <u>제250조</u>, 제250조의2, ----- -----. 第255條(豫備, 陰謀) <u>제250조, 제250조의2</u>----- ----- ----- --. 第256條(資格停止의 併科) <u>제250조, 제250조의2</u>----- ----- ----- -----.